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용숙*

◀ 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형법에 형별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죄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0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무리 강력한 범죄가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없었다. 그런데 현행법 상 사형 다음으로 중형인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신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일명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을 통해 가석방 기간이 유기형 보다 짧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본고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효과 및 증가원인, 나아가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 절대적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 엄벌주의, 삼진아웃 제도, 무기징역, 유기징역

투고일자: 2023.12.5, 심사일자: 2023.12.22, 게재확정일자: 2023.12.28.

*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법학박사.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절대적 종신형의 개관 및 현황
- III.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 및 증가원인
- IV.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
- V. 결론에 갈음하여—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검토

I. 들어가며

엄벌주의와 중형주의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연이은 흉악범죄에 대해 정부는 형벌 강화를 시작으로 경찰 면책규정을 확대 및 불심검문 강화 등 ‘사법 입원제’를 도입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¹⁾ 나아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²⁾ 이런 가운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다.

법무부 입법예고 및 이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국회의원의 개정 법률안(이하 입법예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와 별도로 형법 제42조 제2항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조문을 신설하여 법관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응과 흉악범죄자의 가석방 가능성에 따른 국민 불안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041> (최종접속일 : 2023.12.5.)

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30/R5MMJHGQJ5AHZFU4TQFCTOCNGU/ (최종접속일 : 2023.12.5.)

이하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개념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절대적 종신형의 개관 및 현황

1. 종신형의 개념과 유형

종신형은 삶의 마지막까지 구금의 형을 부과하는 형벌로서, 살아있는 자의 사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³⁾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가벼운 형벌로 여겨지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 또는 유기 자유형보다 형기가 길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이라 인식된다. 즉, 종신형은 범죄자 교정시설에서 평생 구금되는 개념으로 석방가능한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석방여부는 교정시설 내의 행위 및 교화의 의지, 개선 여지의 충분성에 따라 사회복귀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석방은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수형자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종신형의 개념과 유사한 무기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종신형은 다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 Life Without Parole, LWO P)으로서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평생을 교도소에 구금되어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형벌을 의미한다.⁴⁾ 그리고 상대적 종신형(Life Sentence)은 종신형을 선고 받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형벌이다.

수형자에게 가석방은 스스로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한 자극으로 작동한다.⁵⁾ 그

3)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3면.

4) 다만,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구금 후 가석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것은 제도적 보장으로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보다는 수형자가 이미 고령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소멸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정된 것이다.

렇지만 가석방 제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자유주의자 및 보수적인 입법자,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가석방 제도는 동일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 간에 광범위한 양형을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문제점과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⁶⁾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결과, 상대적 종신형의 가석방을 위한 복역 기간은 증가하고 있다.⁷⁾

2.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및 현황

미국에서의 절대적 종신형은 현재 알래스카 주(State of Alaska)⁸⁾를 제외한 49개 주, 워싱턴 D.C. 및 콜롬비아 특별구, 그리고 군사법 등에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⁹⁾ 1841년 메인 주(State of Maine)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1941년 펜실베이니아 주(Commonwealth of Pennsylvania), 1953년 미시간 주(State of Michigan), 1955년 매사추세츠 주(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1965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State of West Virginia), 1967년 네바다 주(State of Nevada)가 뒤를 이었다.¹⁰⁾

이러한 절대적 종신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형제 폐지에 따른 대안적 대체형벌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1972년 연방대법원이 *Furman v. Georgia* 판결¹¹⁾을 통해 사형제도를

5) Ashley Nellis, *Throwing Away the Key: The Expansion of Life Without Parole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Reporter Vol.23. 2010, p.27.

6) John Pratt, *Penal Populism*, Routledge, 2007, p.4.

7) Marie Gottschalk, *Sentenced to Life: Penal Reform and the Most Severe Sanction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9, 2013, p.354.

8) 미국에서 유일하게 종신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알래스카 주에서는 실제 최고 형기 99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Virtual Life Sentence)'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김대근·이인덕·권지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109면.

10)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4~5면.

11) *Furman v. Georgia*, 408 U.S. 238 (1972).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408/238/> (최종접속일 : 2023.12.5.)

위헌이라 판단¹²⁾한 직후, 앨라배마 주(State of Alabama), 일리노이 주(State of Illinois), 루이지애나 주(State of Louisiana) 등이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하였고¹³⁾ 2000년대 들어서도 콜로라도 주(State of Colorado), 캔자스 주(State of Kansas), 텍사스 주(State of Texas) 등 6개의 주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도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의 대체형벌로서 고려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¹⁵⁾

〈표 1〉 미국 각 주별 절대적 종신형 도입연도

도입년도	주	도입년도	주
1841	메인	1993	애리조나
1880	미네소타	1993	조지아
1941	펜실베이니아	1993	워싱턴
1953	미시간	1994	플로리다
1955	메사추세츠	1994	인디애나
1965	웨스트버지니아	1994	루이지애나
1967	네바다	1994	노스캐롤라이나
1974	뉴햄프셔	1994	버지니아
1976	아칸소	1994	위스콘신
1976	캘리포니아	1995	몬타나
1976	하와이	1995	뉴저지
1978	일리노이	1995	뉴욕
1978	사우스다코다	1995	오하이오

12) 이후 1976년 Gregg v. Georgia 사건, Robert v. Louisiana 사건, Proffitt v. Florida 사건에서는 사형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번복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일태,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70-272면.

13) Sharon Dolovich, Creating the Permanent Prisoners, in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NEW DEATH PENALTY? UCLA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11-13, 2011, p.96.

14) 김대근·이인덕·권지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109면.

15) 물론 미국의 경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였지만,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정부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1979	로드아일랜드	1995	사우스캐롤라이나
1981	앨라배마	1995	테네시
1981	워싱턴D.C.	1997	아이오와
1982	와이오밍	1997	뉴멕시코
1984	미주리	1997	노스다코타
1984	오리건	1998	켄터키
1985	코네티컷	2002	콜로라도
1987	메릴랜드	2002	네브래스카
1987	버몬트	2003	텔라웨어
1988	오克拉호마	2004	아이다호
1992	유타	2004	캔자스
1992	미시시피	2005	텍사스

※ 출처 : Year That States Adopted Life Without Parole (LWOP) Sentencing 재구성 16)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된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1급살인(first degree murder)¹⁷⁾이다. 절대적 종신형의 엄벌성을 고려할 때, 불법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에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급살인(second degree murder)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은 범죄유형의 경우에는 상대적 종신형(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의 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¹⁸⁾

나아가 1970년대부터 확대된 절대적 종신형의 적용은 고령 수형자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2020년 기준 55세 이상 61,417명이 종신형 선고를 받고 수형중이며, 전체 수형자의 1/3에 해당한다.¹⁹⁾ 이러한 수치는 1981

16) <https://perma.cc/H52Y-X82Q> (최종접속일 : 2023.10.15.)

17) 미국법에서 살인(murder)은 1급살인(first degree murder)과 2급살인(second degree murder)으로 나뉜다. 1급살인은 사전 계획된 살인,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중범죄 도중 의도치 않은 살인(felony murder)을 포함한다. 2급살인은 사전 계획되지 않은 의도적 살인(우발적 살인) 또는 인명에 대한 존엄성 혹은 타인의 복리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낼 정도로 심각하게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살인이다.(<https://www.henrysalcido.com/homicide-vs-murders-vs-manslaughter/#:~:text=Murder%20is%20the%20most%20serious,but%20they%20are%20also%20felonies.>)

18) <https://www.sentencingproject.org/app/uploads/2022/08/No-End-in-Sight-Americas-Enduring-Reliance-on-Life-Imprisonment.pdf> (최종접속일 : 2023.12.5.)

년 대비 44배, 2000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아이다호, 메사추세츠, 사우스다코다 주의 경우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인 수형자 가운데 절반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고령 수형자는 젊은 수형자 대비 의료비용을 비롯한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현행법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 선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주별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675명이 미성년 당시 저지른 범죄로 55세 이상 된 현재까지 복역중에 있다. 조지아 주의 경우 13세부터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재소자도 있다.

III.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 및 증가원인

1.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달리 생명은 유지할 수 있으나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고 평생 자유를 제한받는다라는 점에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또한 종신형으로 인한 절망감, 외로움, 무기력함, 지인과의 교류 단절, 수형자 사이에서의 비인간적 대우 등 끝없는 수형생활에서 야기되는 고통이 상당하다 전해진다. 이에 절대적 종신형은 응보의 기능을 사형제와 유사하게 수행하는 형벌형태라 평가되고 있다.²⁰⁾

절대적 종신형의 엄벌성으로 인해 실제 사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 가운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항소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사형 선고에서 항소하여 종신형으로 감형될 권리를 포기하고 형집행을 희망한 비율이 약 10%에 이른다.²¹⁾

19) Ashley Nellis, "No End In Sight: America's Enduring Reliance on Life Imprisonment", last modified Feb 17, 2021. p.22.

20) 김대근·이인덕·권지혜,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20, 111면

21) 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 "Execution Volunteers", accessed November 16, 2020, <https://deathpenaltyinfo.org/executions/executions-overview/exec>

또한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도 찬성 여론을 일부 흡수하여 법감정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생명을 박탈하게 되는 사형제도는 이를 찬성하는 국민이나 배심원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부담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의 문제를 일부 해결함과 동시에 중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완전 차단하여 사회방위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는다.

2. 증가원인

1) 엄벌주의

엄벌주의(嚴罰主義, Punitivism)란,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상이다. 혹형주의(酷刑主義)라고도 불린다. 엄벌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적절한 죄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1900년대 초반 미국의 주된 형법 관념은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범죄자의 개선 및 재사회화 사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사회 전체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보수적 정치문화와 맞물려 다시 엄벌주의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 제도를 폐지하고 정기형(Determinate Sentencing)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보호관찰 조건의 가석방을 폐지하고, 강제적인 가중형벌 부과가 가능한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 Laws)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범죄에 대한 통제 정책 기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 역시 엄벌주의 정책 아래 제지(Deterrence)와 자격박탈(Incapacitation)을 수행하는 대표적 형벌이다. 수형자는 사망할 때까지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감시와 감독 하에 생활하게 된다.

엄벌주의가 거론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높지 못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형량 및 처벌, 그리고 후속 조치가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신뢰회복 및 납득 가능한 후속 대책 마련, 가해자의 교화가능성이 있다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의 부수적 대책이 부실한 까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수형자에 대한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률이 높고,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의 관리도 엉망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엄벌주의를 채택하여 징역형이 길어지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감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수형자를 가석방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수형자는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로 빠지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역시 엄벌주의가 호응을 얻는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정부는 결국 방관 내지 방치하고 만다. 문제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 갇혀있지 못한 가해자의 재범률 증가 및 재사회화에 실패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엄벌주의가 확장되는 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를 가진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출직으로 선발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선출직들은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음 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엄한 형벌을 선고하기를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자극적으로 대중의 표를 모으기 위해, 법에서 제시하는 형벌 수준을 계속 높여왔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매우 강력한 엄벌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도 발생한다. 독재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들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반대로 강력한 형벌을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2) 사형제도 폐지와 정치적 영합

(1) 대체형벌로서 엄벌성과 효용성

미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1972년 위헌 판결과 1976년 합헌 판결로 인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거세지며 각 주마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다수의 주에서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미국에서의 사형선고 수는 폐지 여부가 쟁점이 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23건, 2010년에는 114건, 2019년에는 34건으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2020년 기준, 절대적 종신형 인원은 총 55,945명으로 17년 전 대비 66%나 증가하였다.²²⁾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중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원천 차단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축출하고자 한다.

이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예방과 피해자 구조, 사회안전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주장된다.

(2) 법감정 및 정치적 영합

절대적 종신형은 그 엄벌성에도 불구하고 중범죄자의 생명박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감정이 완벽히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ham v. Florida* 판결을 통해 절대적 종신형이 장기수형자의 석방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형기 동안 합리적 기준 하에 가석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²³⁾ 여전히 사형폐지에

22)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12면.

23) *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60/48/>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로 발생하는 중범죄자들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대한 시민들의 동요는 상당했으며,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데 나섰다.

결국 사형의 폐지가 결코 국가형벌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안전성 확보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정치인들, 즉 각 주의 주지사, 주 의원 등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형벌로 가장 엄벌의 법정 최고형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2년 코네티컷의 주지사 Daniel Malloy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사형수들에게 항소를 비롯한 강력한 법절차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이 낭비이며, 이들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조차 불필요한 것이라 주장하였다.²⁴⁾ 더불어 엄벌의 공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평생을 구금상태로 살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독방형태의 엄정독거를 의무화하였다.²⁵⁾

또한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절대적 종신형 수감자에 대한 사형·감형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장기수형자에게 부여되는 석방 탄원신청 역시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²⁶⁾

3) 삼진아웃제도와 의무선고 확대

삼진아웃제도(Three Strikes Laws)는 3회 이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상습범·누범에게 자동적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는 강도·강간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군에 대하여 최소 형기 또는 절대적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강제적 가중형벌의 부과이며, 법관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폭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²⁷⁾

24) Ross Kleinstuber/Sandra Joy/Elizabeth A. Mansley, op.cit., p. 192.

25) <https://www.themarshallproject.org/2014/11/30/what-death-penalty-opponent-s-don-t-get> (최종접속일 : 2023.12.5.)

26) Ashley Nellis, "Tinkering with Life: A Look at the Inappropriateness of Life Without Parole as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67 U. Miami L. Rev. 439 (2012-2013), p. 451.

이 제도는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은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 책임을 가중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형벌문화를 배경으로, 1993년 워싱턴 주에서 처음 도입되어 현재 29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은 1994년 「폭력범죄 통제 및 집행에 관한 법(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을 통해 도입하였다.

각 주별로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강도·강간과 같은 특정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범죄까지도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되기도 한다.

삼진아웃제도는 가중된 형벌의 부과를 의무화한 법제로, 강력범죄를 반복 행할 경우 절대적 종신형을 의무부과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주유소 강도 행위 중 살인으로 나아간 경우와 같이 2급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군에도 의무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²⁸⁾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앞서 행한 두 범죄가 강력범죄이거나 중죄라면 세 번째 범죄가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신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가 절대적 종신형에 해당하는 삼진아웃 형벌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 번째 범죄가 강력범죄일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가장 강력한 삼진아웃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이에 비례성 문제를 포함한 많은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⁹⁾

27) 김종구, “미국의 삼진아웃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30호, 2008, 327-342면.

28) Ashley Nellis, “No End In Sight: America’s Enduring Reliance on Life Imprisonment”, last modified Feb 17, 2021 <https://www.sentencingproject.org/reports/no-end-in-sight-americas-enduring-reliance-on-life-sentences/>(최종접속일 : 2023.12.5.)

29)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14면.

IV.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문제점

1. 인간의 존엄성 침해

절대적 종신형은 교도소 내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점에서 사용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사회와 격리된 채 자유를 제한받게 되며, 강력한 관리감독 하에 노역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변화 또는 희망이 없는 기약 없이 반복되는 수형생활로 많은 수형자들이 치매, 우울증, 유년단계로 퇴화 등의 신체·정신적 질병을 겪게 된다고 한다. 수형자에 따라서는 또 다시 다른 수형자와 격리되어 독방에서 구금되는 경우도 있다.³⁰⁾ 사형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인도적 형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 종신형 그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잔혹한 형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및 지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로 교도소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누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의 상실을 뜻한다.³¹⁾ 다시 말해, 절대적 종신형은 신체적 생명자체는 유지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관계성의 사망을 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절대적 종신형은 그 자체로 수정헌법 제8조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될 잔혹성 및 비인간성을 내포한 형벌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 종신형은 다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형해화하며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가혹한 형의 선고가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하여 비례성 원칙

30) 뉴욕 주의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는 23세 나이에 마약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탈출시도에 실패하여 보안관 1명을 총으로 쏘아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뉴욕주에서는 사형이 없기 때문에 판사는 1987년부터 약 27년간 특별구금공간(SHU, 7×9)에서 홀로 수감하도록 하였으며, 수감 기간 중 하루 한 시간만의 운동이 허락되었고, 운동공간 또한 작은 펜스로 둘러싸인 곳에서 혼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https://www.themars hallproject.org/2014/11/30/what-death-penalty-opponents-don-t-get> 참조)

31)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2013, 398면.

에 위배된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³²⁾

1977년 6월 21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베를린 경찰관(Detlev. R.)이 22세의 마약중독자(Günter L.)를 살해한 사건에서, 종신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지만, 다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종신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지 않는 형행요건이라 판시한 바 있다.³³⁾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아직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비살인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개별 고려 없이 필요적 선고를 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고만 있다.³⁴⁾

2. 사법절차상 한계

절대적 종신형은 형의 엄벌성과 비교하여 절차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형의 경우에는 형에 내재된 회복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형의 확정까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교정소송개혁법(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과 「반테러리즘과 효과적 사형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과 같은 일련의 법률은 사형이라는 특수한 형벌 속성에 부합하는 특별한 절차적 보호를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사형이 선고되면 이후 소송에서 주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필요적 상소제도와 같은 별도의 항소절차가 규정되고 있으며, 상고도 가능성은 물론이다. 재판절차 개시 후 항소를 거쳐 집행에 직면하기까지 평균 16년 정도를 구금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상소에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절대적 종신형은 별도의 사법절차적 권리보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

32) Michael L. Radelet, "The Incremental Retributive Impact of a Death Sentence Over Life Without Parole",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Vol.49, Issue 4, 2016, p. 803.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18면 재인용.)

33) BVerfGE 45, 187, 1977, 무기형판결

34) Graham v. Florida, 130 S. Ct. 2011, 2023 (2010).

아 일반 항소절차가 적용되어, 항소기간은 통상 3년에 불과하다.³⁵⁾ 이에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절차상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³⁶⁾

3. 형벌목적과 도구적 비합리성

형벌이란 국가가 형벌권의 주체가 되어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이다. 이러한 형벌은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1) 예방의 측면(일반예방주의)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을 위하하여 범죄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인이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함에 있다. 즉 형벌은 충실하게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학습효과’, 그로 인해 질서가 확립된 사회가 유지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신뢰효과’, 평화를 어지럽히는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만족을 주는 ‘만족효과’를 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엄벌을 부과하면 범죄를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달리 엄벌을 부과하더라도 범죄, 특히 중범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합리적·이상적 인간상과 달리 우리 인간은 편향성을 보이며, 무엇보다 강력범죄자의 경우 합리적 판단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절대적 종신형이 선고될 정도의 강력범죄자는 합리적 이익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강력범죄일수록 범죄예방은 실제 형벌의 중함 정도보다는 적발위험 및 처벌위험의 정도에

35) 최근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운영을 선택한 10개 주 중에서도 일리노이 주와 뉴저지 주 2개의 주만이 특별 사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Ashley Nellis, “Still Life: America’s Increasing Use of Life and Long-Term Sentences”, last modified May 3, 2017.)

36) Rob Warden, “How and Why Illinoi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30 L. & INEQ, 2012, p. 262.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21면 재인용.)

영향을 받는다.³⁷⁾

2) 재사회화의 측면(특별예방주의)

형벌의 또 다른 목적의 하나가 범죄인을 개선·교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적 종신형의 부과는 범죄자에게 더 이상 교화를 통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사회 복귀의 희망이 박탈된 상태이므로 개선과 교화의 의지가 상실되기 쉬우며 성실한 교정생활에의 동기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³⁸⁾ 결국 이론상으로 절대적 종신형은 재사회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교정비용의 증가

절대적 종신형의 확대는 교도소 내의 과밀화 및 구금시설 운영비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정시설 내의 과밀화는 수형자의 관리·통제의 어려움이 증대되어 교도관리인력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충할 인적자원의 투입 수요가 증대된다. 나아가 과밀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교정시설 건설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 종신형의 확대는 고령의 수형자 비중의 증가를 불러일으켜, 고령자 수형자의 노화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 평균적으로 고령의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2~3배의 구금비용이 지출된다고 한다.³⁹⁾

37)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1, 23면.

38) 물론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절대적 종신형 수형자가 일반 수형자 및 상대적 종신형 수형자보다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개선·교화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실증적 연구에 대해서는 Rober Johnson/Sandara McGunigall-Smith,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other death penalty: Notes on life under sentence of death by incarceration”, The Prison Journal Vol. 88, No. 2, 2008, p. 331. 참조

39)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americas-expense-mass-incarceration-elderly> (최종접속일 : 2023.10.15.)

V. 결론에 갈음하여

—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검토

우리나라는 형법에 형별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죄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0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교정기관에 수감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아무리 강력한 범죄가 발생해도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없었다.⁴⁰⁾ 그런데 현행법 상 사형 다음으로 중형인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신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일명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을 통해 가석방 기간이 유기형 보다 짧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⁴¹⁾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입장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희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40) 2021년 12월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사건’, 같은 해 12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자에 대해 하급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상급심에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혹은 파기 환송했다. 2019년 5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든 ‘고유정 사건’, 2019년 8월 투숙객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사건’, 2021년 3월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 모두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사건’, 2022년 12월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2명을 살해한 ‘이기영 사건’ 등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모든 판결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사형이 선고, 확정되긴 어렵다. 이 상황에서 흉악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형은 무기징역형이다.

41) 신당역 보복살인을 한 전주환이 1심에서 받은 49년의 유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면 39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심에선 유기형이 가법다고 보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은 무거워 졌지만 가석방 기간은 20년으로 짧아졌다.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⁴²⁾

우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위험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정안은 사형제도 존치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기존 논의와 궤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국가의 상당수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규정들을 조사·검토해 현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을 사형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사형 못지않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그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제도의 장·단점 등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함께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에 못지않은 형벌이고,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키며 또 다른 위험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³⁾

법원행정처는 아울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2) <https://www.lawtimes.co.kr/news/190851> (최종접속일 : 2023.10.15.)

43)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살인 사건은 2012년 1022건에서 2021년 692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화와 사회복귀의 여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새로운 형벌을 도입하는 것이 응보의 목적 이외에 범죄 예방 등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에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이나 종신형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형법 제51조에 제2항을 신설해 종신형의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 그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대한변호사협회 입장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함)는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최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법관이 사안에 따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런 법 집행의 현실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⁴⁴⁾

3.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한편,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인 지난 10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

4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570840&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최종접속일 : 2023.10.15.)

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 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⁴⁵⁾

4. 사건

우리나라 형법 제42조⁴⁶⁾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⁴⁷⁾에서는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경우 집행 20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우리 형법에서는 가석방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유사한 형태의 무기형을 현재 채택하여 운영중이며,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도입하고 있지 않다.

만일 미국의 여러 주들과 같이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도입시 전술한 사법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절대적 종신형이 가지는 형벌의 엄격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도소 과밀화 및 교정비용의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에 충실하더라도 국가형벌권과 그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법정최고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⁴⁸⁾

게다가 사형제와 관련한 논쟁에서 제기된 사형폐지를 주장하는 논증들 가운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논증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위헌성 논쟁에서 재차 등장

4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10500024&wlog_tag3=naver (최종접속일 : 2023.10.15.)

46)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47)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48) 물론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자주 시행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성이 상당 부분 현실에서 상쇄된다는 견해도 있다. 허일태,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동아법학』 제4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234면.

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한 주장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점차 강해져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 및 상대적 종신형의 확대로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미국 법학계에서 흐름이자 이미 사형을 폐지한 유럽 각국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며 형벌수단으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나아가 사법절차적 보완이 요청되는 절대적 종신형을 우리 법제에 도입해야할 필요성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므로 응보 및 사회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법감정에 영합한 현재와 같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 입법안보다는 무기형을 유지하되, 가석방 심사제도의 실질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된다.⁴⁹⁾

49) 한영수,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120면.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대근 · 이덕인 · 권지혜, 『사형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20.

논문

권지혜, “미국의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52집, 2022.

김종구, “미국의 삼진아웃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30호, 2008.

류병관, “최근 미국의 소년사법과 ‘미연방수정헌법 제8조’-소년범의 인권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LWOP)-”, 소년보호연구 제24호, 2014.

류성진, “미성년 범죄자와 미국 수정헌법 8조 해석의 확장”,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2013.

주현경,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제68호, 2013.

최희경, “수정헌법 제8조에 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판결 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2012.

한영수,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종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2021.

허일태,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2000.

[해외문헌]

John Pratt, Penal Populism, Routledge, 200

Ashley Nellis, Throwing Away the Key: The Expansion of Life Without Parole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Reporter Vol.23. 2010.

- _____, “Tinkering with Life: A Look at the Inappropriateness of Life Without Parole as an Alternative to the Death Penalty”, 67 U. Miami L. Rev. 439 (2012-2013).
- _____, “Still Life: America’s Increasing Use of Life and Long-Term Sentences”, last modified May 3, 2017.
- _____, “No End In Sight: America’s Enduring Reliance on Life Imprisonment”, last modified Feb 17, 2021.
- Marie Gottschalk, Sentenced to Life: Penal Reform and the Most Severe Sanctions,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9, 2013.
- Michael L. Radelet, “The Incremental Retributive Impact of a Death Sentence Over Life Without Parole”,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Vol.49, Issue 4, 2016.
- Rob Warden, “How and Why Illinoi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30 L. & INEQ, 2012.
- Rovert Johnson/Sandara McGunigall-Smith,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other death penalty: Notes on life under sentence of death by incarceration”, The Prison Journal Vol. 88, No. 2, 2008.
- Sharon Dolovich, Creating the Permanent Prisoners, in LIFE WITHOUT PAROLE: AMERICA'S NEW DEATH PENALTY? UCLA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11-13, 2011.

〈Abstract〉

A Study on Life Without Parole

Park, Yongsook*

Korea's criminal law stipulates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It also provides for the death penalty for heinous crimes such as murder. As of October 2023, 59 death row inmates are incarcerat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Looking at court rulings over the past 10 years, no matter how serious the crime was, there was no case in which the death penalty was ultimately confirmed. However,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life imprisonment, which is the second most severe punishment after the death penalty under the current law, is insufficient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Above all, the so-called 'Sindang Station revenge murder' incident raised the realistic issue that the parole period may be shorter than the prison sentence.

Considering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Justice is announcing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that is,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In response to this, the Supreme Court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expressed the opinion that judgment should be made cautiously, which is in fact the opposite position.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and status of absolute life sentences, their effects, causes of increase, and further problem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implements absolute life sentences, and then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m in Korea.

Key words : Life Without Parole, LWOP, Life Sentence, Punitivism, Three Strike Laws

* Assistant professor, Ph.D. in Law, Kangwon National University.